

#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

## - 검토 보고 -

### 제안이유

- 그동안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도조례의 개정으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고,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자 함.

### 주요골자

-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기록·관리하도록 함(안 제2조)
-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)
-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·건축·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, 제6조)
-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를 정함(안 제7조)
-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교육위탁자 선정 방법 절차를 정함(안 제12조)
-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·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(안 제13조)
-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함(안 제15조)

###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
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○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-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
- 시·군·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

## □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7월과 11월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의거 도조례의 개정으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하여 미풍양속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
-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의 제3장 금지 및 제한과 제4장 표시방법의 각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제정조례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에 있어 법규 연찬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행정의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
- 이 조례는 규정사항이 많고 복잡하므로 민원인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만큼 이해와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건축법 등 많은 종류의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관련되는 만큼 수시 개정되는 법령 등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숙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